

현안분석 2015-02

#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이준호

현안분석 2015-02

#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이 준 호

#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The Legal Study o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연구자 : 이준호(연구위원)  
Lee, Joon Ho

2015. 9. 18.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테마인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제도는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사전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산재된 개별법의 적용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 이러한 배경으로 국회에 입안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

### □ 연구의 목적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설명과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내용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검토하여, 향후 제정·입법되어 제도로서 운영될 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 ○ 사업재편의 의의

-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식을 변경하는 활동

#### ○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산업발전법

### □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중에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시도하려는 기업

#### ○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

- 주무부처에 신청 → 주무부처의 검토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 → 주무부처의 승인

### □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특례지원

#### ○ 상법에 대한 특례

- 기업의 소규모 분할 인정
-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사회 승인 같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사회 승인 같음
- 간이합병 기준 완화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사회 같음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사회 같음
- 역삼각합병 도입
-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 부채비율·주식소유비율 제한, 비계열회사와 자회사 이외 계열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금지 등 사업재편기간 동안 적용 유예
-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여 정부가 규제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제도와 법령의 적용유무 등에 대한 확인 요청 제도의 도입

###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국회계류법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주제어 : 사업재편, 구조조정, 합병, 주식교환, 지주회사 규제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One of the important themes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is the effective corporate restructuring.
- Currently, Korea's business reorganization scheme is not the system that leads the marketplace, and is the system that is in progress ex post. Additionally, since applicable laws are sporadic, the system has the difficulty in the flexible oper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
- In this background, to remove the barriers to the procedural provisions by applying for an exemption for commercial law and competition law, the bill of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 Purpos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by performing analysis for the bill that is currently pending in Congress, is to research and review the legal aspects for the business supporting system restructured as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 II. Main Contents

- General theory of business reorganization support
  - Concept of business reorganization
    - Change the whole or part of the structure of the business as a business activity aimed at a great extent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or part of the business, or business to take advantage of the resources of the system to change the whole or part of the business activity
  - Laws in relation to business reorganization
    - Commercial Act,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Industrial Development Act
- Governance and Support of business reorganization
  - Subjects
    - Companies seeking to reorganize the business to try to eliminate the excess supply from domestic companies
  - Application and Approval for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 Application to the Ministry → Review of the Ministry → Review of Business Reorganization Committee → Approval of the Ministry

- Special support by the business reorganization bill
  - Special application of Commercial Act
    - Introduction of small-scale division of company
    - Easing the requirement of small-scale merger
    - Easing the requirement of simplified merger
    - Introduction of reverse triangular merger
  - Special application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During business reorganization period, Postpone application of regulations of Debt ratio limitation, Shareholding ratio, Prohibition of shares of non-affiliated companies and other affiliates except for the subsidiary companies.

### **III. Expected Effect**

- Material and Information used as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and supporting laws in relation to business reorganization.
- Reference used as legal data for the change in laws on the supporting legal system for corporate restructuring.

 **Key Words : Business Reorganiz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Merger, Share Exchange, Holding Company**

# 목 차

요 약 문 .....	5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7
제 2 장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	19
제 1 절 사업재편의 개념 .....	19
I. 사업재편의 의의 .....	19
II. 사업재편과 기업구조조정 .....	22
III. 사업재편 대상기업과 부실기업 .....	25
제 2 절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	29
I. 상 법 .....	29
I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
III.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32
IV.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4
V. 산업발전법 .....	37
제 3 장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	39
제 1 절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 .....	39
I. 지원대상 .....	39
II.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	41

Ⅲ.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	47
Ⅳ. 사업재편계획 승인기구 .....	47
제 2 절 사업재편지원의 지원내용 .....	48
Ⅰ. 상법에 대한 특례 .....	48
Ⅱ.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	56
Ⅲ. 세법상 세제지원 특례 .....	60
Ⅳ. 기타 지원제도 .....	63
제 4 장 사업재편지원의 법적 쟁점 .....	67
제 1 절 추진체계 관련 쟁점 .....	67
Ⅰ. 사업재편계획의 정부승인에 의한 법안 적용 .....	67
Ⅱ. 적용대상 명확성의 문제 .....	69
Ⅲ.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	71
Ⅳ.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	72
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74
제 2 절 지원내용 관련 쟁점 .....	75
Ⅰ. 상법상 특례 관련 쟁점 .....	75
Ⅱ. 공정거래법상 특례 관련 쟁점 .....	82
Ⅲ. 기업실증특례제도·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	87
제 5 장 결 론 .....	95
참 고 문 헌 .....	9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테마인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추진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업퇴출과 기업회생에 국한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전환하고, 정상기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경제위기 등에 강한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이른바 “사업재편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사업재편지원법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입안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제도는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이고 사전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적으로 산재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내용이 해당 사항에 개별법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채무구조가 붕괴되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실기업과 이러한 장후가 사전적이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실장후기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근거로 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운영되는 반면에,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이른바 “법정관리”제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근거한 기업조직재편행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기업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개별법제도의 틀 안에서 비효율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형태의 법제도 운영은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시각각 나타나는 경제위기에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제한이 존재하게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관한 법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선을 심각하게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재편제도를 일괄적으로 타결하여 “원스톱 방식”에 의한 사업재편제도의 운영을 원하게 되었고,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사업재편행위가 장애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서, 보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성장과 산업활성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회에 입안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 하였고, 지원주체로서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제도 운영방식을 사업재편지원 법안에 담게 되었다. 이 법안은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취지와 입법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단일한 독립된 법률에서 관련된 여러 법률을 동시에 일괄하여 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고 하여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우는 『산업활력법』을 시작으로 하여, 일련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가장 최근에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상법과 공정거

래법 등 사업재편과 관련된 법조문에 대한 특례를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지원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지원법안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설명과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내용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검토하여, 향후 제정·입법되어 제도로서 운영될 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재편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사업재편의 의의, 사업재편과 기업구조조정과의 관련성, 사업재편 대상기업과 부실기업 등과의 비교를 살펴본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이 입안되기 전까지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들이 있었으며, 해당 사항별로 개별 법률들이 적용되는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사업재편지원법안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업재편지원법안이 입안되기 전에 시행되어 온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유사법률들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설시한다.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최근에 발표된 세제지원사항을 설명하다. 다만, 세제지원의 법리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

항이므로, 현재 발표된 정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을 소개한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충분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따라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다. 특히, 추진체계 관련하여 법체계적인 측면과 적용대상의 명확화 문제, 사업재편계획의 내용과 법령의 체계정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또한 지원내용 관련하여 상법상 특례 중 일부 법리적으로 또는 기존 법률과의 관련 등을 고려한 쟁점들을 검토한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의 법률로서 향후 보완될 내용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위법령 등으로 추가·보완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결론을 갈음하기로 한다.

## 제 2 장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 제 1 절 사업재편의 개념

#### I. 사업재편의 의의

우리나라의 사업재편 또는 기업재편은 상법, 공정거래법, 기타 구조조정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상법상 회사의 조직재편 규정을 근간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법상 회사의 조직재편 규정에 관하여 “구 일본 상법상의 규율을 그대로 본받아 합병, 영업양수도, 조직변경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합병, 영업양수도, 조직변경만으로는 당시 속출하는 도산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수단의 정비·확충을 위한 상법 개정이 요청되었고, 1998년 상법개정을 시작으로 합병절차의 간소화·합리화, 회사분할제도, 간이분할합병·소규모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기업조직재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법적으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법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학 이외의 학문에서는 보다 폭 넓은 개념영역에서 기업의 조직재편을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이 아닌 경영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계획이란 ‘사업의 구조변경’ 또는 ‘사업방식의 변경’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하여 ‘기업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획을 의미하는

1)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3권 제1호(2014), pp.9~10

데, ‘사업의 구조변경’이란 합병, 회사설립, 회사분할, 회사청산, 주식 교환, 자산 양수, 등 사업주체가 기존의 경영자원에 다른 경영자원을 추가하거나, 기존 경영자원을 처분하여 기업의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방식의 변경’이란 신상품 개발 및 생산, 공정 개선,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표현한 경우로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재편이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3)</sup>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식을 변경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sup>4)</sup> 제2조제11호)

---

2) 김용춘, 사업재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pp.32~33

3) 김윤경, 기업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일본 산할법의 시사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자료 (2015년 6월 17일), p.4

4)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치된 일련의 입법작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최종적인 단계로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지원법안도 일본의 동 법률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가지는 입법목적과 취지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입법목적 및 취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축조해설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즉, 산업경쟁력강화법 제3조 기본이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법에서 『산업경쟁력』은 사업자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충분한 수요확보의 노력을 통하여 강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에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개선을 실시하여 설비투자와 구조조정 등 사업의 생산성향상 및 수요의 확대에 이어서는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식을 표명한 후, 사업자에 의한 이러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비롯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조치를 할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사업자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양자의 대응이 일체가 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국가와 사업자 각각의 역할

우리나라 사업재편법안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①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고, ②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사업재편법안 제2조제2호)

이 외에도 “기업조직재편이란 기업구조조정의 일영역으로서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단위를 통합·분할하는 등 기업의 조직을 새로이 편성하는 것으로서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인수도, 주식교환·이전(지주회사설립·전환) 등을 그 수단으로 한다”고 정의한 선행연구도 있으며,<sup>5)</sup> 이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이란, 기업의 조직 및 운영구조에 자원의 배분과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기업의 조직을 재편하거나, 재무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또는 기업을 해체·청산 또는 재건·갱생시켜 자원의 배분과 사용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sup>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사업재편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생산성의 향상”과 “기업재편방식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생산성의 향상”

---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법의 원칙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개별 사업활동은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자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며, 국가의 역할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와 지원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불가결이기 때문에,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 逐条解説, 一般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会 (2014.5.22.), pp.66~67)

5) 최성근, 기업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의 분석 및 평가, 법학논총 제29집, 청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11), p.251

6) 최성근, 앞의 글, p.251

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기업재편방식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선택은 법률적으로 논의되는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sup>7)</sup> 등의 법적 개념으로서의 기업재편행위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경영학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에서는 사업재편과 관련을 가지는 기업구조조정의 확대된 개념영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 II. 사업재편과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에 관한 개념정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적 측면의 접근과 경영학적·경제학적측면의 접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연구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경영학적·경제학적 접근에 의한 정의와는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구조조정이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하여 그 법적인 구조를 사후적으로 조정, 변경하는 것 내지는 그 법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sup>8)</sup> 경영학적·경제학적 접근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수단을 고려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다소 협소한 의미로 기업구조조정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

7) 우리나라에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2000년 10월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였는데, 그 후 2001년 7월에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용춘, 기업재편으로서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소고,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2006.9), p.25)

8)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성사 (2011), p.40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기한 경영학적·경제학적 접근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을 정의함으로써 법률적 측면의 기업구조조정 개념 보다 광범위한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법률적으로 적용범위가 확정된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영역과 범위

- 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라 함은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 즉 지배구조, 사업구조,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기업의 문제 있는 모든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부실장후기업은 물론 정상기업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sup>9)</sup>
- 기업구조조정은 계속기업가치가 높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청산가치가 높은 부실기업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봉착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부실기업들은 신속히 청산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위험에 처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법적 구조, 소유 구조, 영업 구조, 재무 구조(자본 구조), 인력 구조 등을 최적화하고, 반드시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가혹한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기업 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축소, 확장, 다각화 전략도 포함된다.<sup>10)</sup>

9) 대한상공회의소,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개선 및 구조조정모태펀드 조성방안, 지식경제부 (2009.2), p.24

10) 조항래·박상진,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9), p.8

기업경영의 목표의 달성과 효율적 경영추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의 개념에 있어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적 측면의 기업구조조정 개념은 상법 등과 같은 기업조직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구조의 사후적 조정과 변경을 통한 수단을 강조함으로써 법제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한시킨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점은 사업재편지원법안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목표가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의 목표와 동일하고 볼 수 있으나,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가시화되고 제도로써 형성될 수 있는 사업재편을 시도한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시행목적은 경제학적·경영학적 측면의 기업구조조정의 목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법률적 측면의 기업구조조정의 의미만을 강조하게 되면, 상법 등과 같은 기업조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등과 같이 법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수단만이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기업환경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정상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 기업이 도산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기업구조조정은 법제도적으로 정착된 방법만으로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게 되며, 특히 장기적인 기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화된 기업구조조정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과거 1990대 중반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 정부는 법제도적인 틀안에서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도모하였으나, 기업부실의 장기화와 부실채권 해소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사업재편지원법안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법제도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업조직재편행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사업재편방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 Ⅲ. 사업재편 대상기업과 부실기업

#### 1. 현행법상 부실기업의 개념

현행법상 “부실기업”에 대한 정의는 해당 개별법률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의와 개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부실기업” 또는 “부실기업과 유사한 기업” 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본적으로 동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대하여 정의를 한 이후에, “부실징후기업”을 규정함으로써 동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실기업”보다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입법의 목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

11) 오영택·정성필, 국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와 그 대안을 위한 서론적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2011.9), pp.159~160

12) 사업재편지원법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는 “사업재편”를 정의함에 있어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합병·분할 등의 방식과 함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사업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업환경의 변화와 사업재편방식의 다양성을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적용되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기준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4호) 또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5호)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 법이 적용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채권금융회사)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마찬가지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실기업”보다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가 적용되는 기업을 확정하기 위하여,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

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이러한 취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가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자회사와 해당 기업간의 약정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부실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약정 체결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는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동 법률의 특징상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법표현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징도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①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60조제1항)

## 2. 사업재편지원 대상기업과 부실기업 비교

부실기업의 법적유형에 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워크아웃 대상기업기업으로서 재무적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권금융기관이 상호약정 및 대상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사적인 구조조정 관리절차의 대상기업과, 기업회생 대상기업으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변제불능)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파산 원인의 염려)에 처한 기업으로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1·2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동법 제49조)과, 파산 대상기업으로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의 사유로 채권자 또는 채무법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및 제306조)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부실기업의 법적 유형이 가지는 의미는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등이 사업재편지원의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등이 구조조정의 중요 대상으로 여겨졌다. 반면에 정상기업은 사업전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등이 사실상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등장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 의해서 분류된 상기 표의 내용은 현행법상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분류로서 의미가 있으며, 사업재편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재편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등도 사업재편지원의 대상이 된다면, 폭 넓고 광범위한 지원정책이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13) 빈기범 외 8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12), pp.56~57

다면, 현행 기존의 구조조정지원법의 테두리에서 이들을 해결하고 정상기업으로서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지원정책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제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된 기업,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이 된 기업,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등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하였다.

## 제 2 절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 I. 상 법

상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재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주요 지원내용인 기업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다른 법률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국가가 해당 기업에게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장을 무대로 하여 기업 및 기업관련자들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특별한 사법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법률이 아닌 상법은 특별한 사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적자치와 이익조정 등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과 불평·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의 조정과 주주·채권자 등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와 주주·채권자 보호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재편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 또는 주식의 교환과 이전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직재편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구조조정 등의 용이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상법에 의한 조직재편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력 집중과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법과는 성격이 다른, 시장질서와 기업행위의 공정성 확보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매우 엄격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결합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며,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기업규제 내용은 상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장애 보다 더

강력한 장애요소로서 평가된다.<sup>14)</sup>

## I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따라서 이 법의 목적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자산의 공정한 환가·배당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제도 운영의 공정성확보가 최우선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회생 절차의 중요 상황에서는 항상 법원이 개입하여 절차진행과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기업의 구조조정과는 크게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절차의 진행과 채무자회생절차는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중요 핵심사항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다.<sup>15)</su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이 기업의 조직재편행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사업재편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기

14) 따라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다른 특별법과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과는 다르게, 업종이나 기업규모 및 기업의 상황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로서 인식된다. (곽관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2), p.49)

15)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된 기업과 동법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법안 제4조제2호·제3호)

타 구조조정 관련 법률이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킴으로써 경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점<sup>16)</sup>에서 다른 구조조정 관련 법률과 차별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Ⅲ.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법률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다. 사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동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요건의 구조가 사업재편지원법과 매우 비슷하며, 특히 제도운영의 추진체계 즉,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해당 중소기업자가 제출하여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받음으로써 사업전환제도의 지원과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구조는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추진체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례규정의 내용으로서 주식교환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합병, 주식교환무효의 소, 영업양수, 분할·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의 내용도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특례규정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전환과 관련된 개념 및 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재편지원법안과 비교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외에 “사업전환”의 개념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 또한 시사점을 갖게 된다. 다음은 현행 법률과 과거 법령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개념을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16) 조항래·박상진,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9), p.16

※ 사업전환의 개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3)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 산업발전법 시행령 (1999)

제 8 조(사업전환의 개념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것

○ 산업발전법 시행령 (2014)

제 6 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것

상기 표에서 설명되고 있는 사업전환지원법과 산업발전법상의 사업 전환개념은 사업재편지원법상의 사업재편개념과 핵심적인 사항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의 방식이 이용된다는

점과 사업의 규모 등을 축소 또는 추가·전환 등을 하는 방식은 사업재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전환지원법과 산업발전법상의 사업전환개념은 사업전환방식에만 치중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 사업전환과정이나 방식의 운용 등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등에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사업전환지원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당히 파격적인 특례규정의 적용과 지원규모 등에서 차이가 나며, 단순히 사업전환목적과 계획의 승인만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전환법과는 달리, 사업재편지원법안은 구체적인 “공급과잉”과 “생산성향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요건을 전제로 하여 법 적용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 IV.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사업재편지원법안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재편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기 전까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지원법률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입법목적이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의 달성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지원법안이 추진되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제2조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기준금액)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부실징후기업”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산에 이르지 않는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함으로써 사전적인 구조조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과 목적을 가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기업구조조정절차는 주거래은행 등의 관리절차개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①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②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③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2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상기한 3가지 관리 중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 제4조제3항)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법 제5조)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

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법 제7조제1항) 이러한 요구에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법 제7조제2항)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1항) 그리고 주채권은행은 이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또한, 주채권은행은 점검결과를 기초로 해당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3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가지는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지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업재편지원법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대상과 지원의 추진체계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관련성”과 “금융위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라는 2가지 환경요소를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의 시행 목적 중의 하나가 대상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에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재편지원법안과의 차별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대상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특징이 바로 기존 구조조정지원정책이 사후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전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법률이 사업재편지원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 V.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기업구조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관련법 중에서 가장 자세하고 세부적인 대상기업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발전법』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등 기간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개선을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바,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기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1조의 구조조정 대상기업<sup>17)</sup>에 사모투자

17) 『산업발전법』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전문회사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사업재편지원법안과의 형식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하여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개념범위도 다른 유사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정상기업으로서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부실채권해소 또는 워크아웃과 기업도산 등에 의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충격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성격에 이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사업재편지원정책의 방향성이 법안 적용확대의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현행 구조조정 관련 법상의 대상기업도 사업재편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환 등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 가. 어음의 부도
    -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 다. 보증채무의 이행
  5. 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6.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제 3 장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 제 1 절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

#### I. 지원대상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적용범위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고, 국내기업 중에서 과잉공급<sup>18)</sup>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시도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법안 제4조) 따라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법안에서는 대상기업의 범위와 “과잉공급”의 기준 그리고 “사업재편”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법안 제2조 제1호)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며,(상법 제169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18)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산업경쟁력강화”라고 규정하면서, 일본 경제에 있어서 산업경쟁력의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 “3가지 과잉”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잉”에 대해 해소를 수단으로 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축조해설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과잉”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사업자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지표로서 개별 제품과 서비스의 브랜드 파워, 비즈니스 관련 제도 등의 입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전제로 하여 결국 개별 사업자가 높은 생산성과 충분한 수요의 확보를 통하여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과 힘을 『산업경쟁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전신인 『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의 『3가지 과잉 즉 채무, 인원, 설비에 관한 과잉』의 해소를 정책목적으로 하여 생산성 향상만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 법은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로서 『수요의 확보』를 또 하나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하여, 이외에 모든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높은 수익성의 실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는 이 법에 따른 각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지원 조치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 또는 수요 확보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 逐条解説, 一般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会 (2014.5.22.), pp.20~21)

로써 성립하게 된다.(상법 제172조) 그러나 모든 상법상 회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이른바 “외국회사”를 제외한 국내기업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상법 제614조) 상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회사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인 이른바 “유사외국회사”의 경우에도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17조, 법안 제2조제1호 단서)

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이 과잉공급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과잉공급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법안 제2조제4호) 법률에서는 과잉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만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의 구체적인 기간, 공급증가 및 수요의 감소의 기준, 경영상황의 지속적 악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과잉공급의 해소를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법안 제9조·제10조)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법안 제2조제2호) 모든 활동이 사업재편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안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활동에 해당되어야만 법안이 인정하는 사업재편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인 활동은 ①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②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법안 제2조제2호가목·나목)

법안에서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기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4조 각 호) 구체적으로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된 기업,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이 된 기업,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향후 등장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기 기업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되어, 이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으로서 과잉공급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법안 제4조제1호)

## II.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 1.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국내기업으로서 과잉공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받아야 한다.(법안 제9조제1항) 여

기서 말하는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2조제5호)

사업재편계획의 신청하는 신청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① 사업재편의 필요성, ② 사업재편을 통해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속한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④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⑤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⑥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서류(기업결합신고서류), ⑦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⑧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⑨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법안 제9조제2항 각 호)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기간을 3년으로 법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9조제3항) 계획기간의 법정은 실제로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시행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법안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계획기간의 연장은 인정되고 있지만, 계획기간은 법안이 적용되어 이에 의하여 지원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청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3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기업으로서는 이 기간 내에 사업재편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사업재편계획은 일반적으로 단독신청이 이루어지겠지만, 2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법안 제9조제4항) 이 경우에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sup>19)</sup> (법안 제9조제5항)

신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안 제9조제6항) 또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① 사업재편계획상 허위·부실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법안에서 의미하는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기업이 법안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사업자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안 제9조제7항 각 호)

19)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천억원이상인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인 해당하는 다른 회사(상대회사)에 대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겸임을 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로 갈음한다.(법안 제10조제1항)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기간에 따라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법안 제10조제2항) 또한,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기업이 요청한 지원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법안 제10조제3항)

주무부처의 장은 ① 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업재편을 통해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②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법안 제10조제4항)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①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②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③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④ 그 밖에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법안 제10조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를 당해 사업자가 입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기업결합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무부처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법안 제10조제6항)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법안 제10조제7항) 이 경우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법안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고 주무부처의 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지원내용에 한한다.(법안 제10조제8항)

### 3. 사업재편계획의 변경과 승인취소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계획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다.(법안 제12조제1항)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상황과 사유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법안 제12조제1항 각 호)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승인신청절차와 동일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법안 제13조제1항) 취소절차의 경우에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안 제13조제2항·제3항)

상기한 승인취소절차에 의하여 사업재편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적용과 지원은 정지된다.(법안 제14조제1항) 특히, 승인취소기업이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하여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고,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법안 제14조제2항)

### Ⅲ. 사업재편계획 승인요건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요건은 일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으로서 법안에서 요구하는 “과잉공급기준”과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사항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할 경우에 대한 승인요건에 관하여는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규정하여 이를 토대로 승인심사를 하게 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실시지침을 통하여 승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즉, 법안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안 제7조제1항)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①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③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법안 제7조2항)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법안 제7조제3항)

### Ⅳ. 사업재편계획 승인기구

사업재편지원법안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승인·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연장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법안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법안 제6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는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법안 제6조제5항·제6항)

## 제 2 절 사업재편지원의 지원내용

### I. 상법에 대한 특례

#### 1. 합병 등에 대한 특례

##### (1) 소규모분할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법안 제15조제1항) 이 경우 상법상 소규모합병의 규정을 준용하여 존속하는 회사의 분할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할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분할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분할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할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분할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분할을 할 수 없다.(법안 제15조제2항)

## (2) 소규모합병

일반적으로 상법상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사항 등은 대표적인 기업의 조직재편행위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교환의 경우에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3제1항) 그런데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병절차 진행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상법상 소규모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527조의3제1항)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상법 제530조의11제2항) 그런데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16조제1항)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 및 산

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의 내용으로서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승인으로 같음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신속한 합병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미국의 모범회사법과 일본의 신회사법에서 20%로 규정하고, 일본 경쟁력강화법에서 2/3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sup>20)</sup>상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합병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그 계획의 승인으로 소규모합병을 시도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승인의 같음을 위한 절차요건을 벤처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승인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sup>21)</sup>는 내용으로서 법안에 반영되었다.

상법에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승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사업재편 지원제도 구축방안 - 특별법 제정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2015.4), pp.21~22

합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 또는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16조제2항)

### (3) 간이합병

상법에서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제1항)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간이합병을 하는 경우의 요건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였다.(법안 제17조)

이러한 입법은 기업과 산업계의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합병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의미가 없으며,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요건으로 주식보유요건 90%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개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경우도 간이합병의 이사회승인 갈증요건을 2/3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사회 승인의 갈증이 가능하도록 한 상법규정에 대해서 2/3 이상을 보유해도 이사회 승인이 갈음하도록 특례규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sup>22)</sup>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 합병절차

상법상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영업양도·양수를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제1항)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 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기 목적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18조제1항)

상법에서는 주식교환·이전계약서, 합병계약서, 분할·분할합병계약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관련 등기 등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기한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22) 대한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pp.22~23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상기 서류 등을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였다.(법안 제18조제2항)

상법에서는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폐쇄일 또는 기준일을 정할 때에 그 날의 2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54조제4항)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18조제3항)

#### (5) 채권자보호절차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승인기업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합병 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 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19조제1항) 또한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법안 제19조제2항)

기업 및 산업계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이 길어서 신속한 합병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알고 있는 채권자’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실무상으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개별통지를 하게 되는 실정에 있고, 일본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

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자에 대한 합병이의 제출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sup>23)</sup>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합병 등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 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기업 및 산업계의 주장으로서 “회사의 합병 이후에 회사의 변제여력에 변화가 없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데, 회사의 변제여력이 있다는 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일본 회사법의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법에서는 채권자가 위험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호절차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채권자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음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sup>24)</sup> 이를 반영하여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역삼각합병의 도입

상법에서는 현재 이른바 역삼각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 역삼각합병이 개정안이 있을 뿐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아직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삼각합병”이란 표현은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법안에서는

23) 대한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pp.25~26

24) 대한상공회의소, 앞의 자료, pp.26~27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특례”로 표현하여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법에서는 제342조의2제1항에서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와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의 경우 제외하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①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와 ②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을 할 때에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취득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안 제21조제1항) 또한 국회계류중인 상법개정안과 내용을 함께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2.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우리나라의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재편지원법안과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양수 등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제1항) 자본시장법에서는 상법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상 합병 등의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의2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안 제20조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법안 제20조제2항)

## II.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 1. 지주회사규제에 대한 특례

#### (1)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사업재편지원법안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승인기업에 대해서 3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주회사규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안 제22조제1항) 즉,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의 금지,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법안 제22조제1항 단서)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일반적 규제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받을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법안 제22조제2항)

#### (2)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특례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3년간 금지되지 않는다.(법안 제23조제1항) 또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면서,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도 3년간 금지되지 않는다.(법안 제23조제2항)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받을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법안 제23조제3항)

### (3)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와 함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3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면서,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이상 소유하면서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간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법안 제24조제1항) 이러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받을 당시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법안 제24조제2항)

## 2. 기업집단에 대한 특례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와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 이를 허락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또한, 상호출자 등이 허락되는 경우에도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이 경우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와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가 허락되고,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9조의2제3항제1호)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제9조제2항과 제9조의2제3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법안 제25조)

###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법에서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0조의2) 또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를 받은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은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14조제3항제3호)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고 있는 경우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6조제1항) 다만, 이러한 법안의 규정은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법안 제26조제2항)

### 3. 특례기간의 기산 및 연장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하여 규정된 공정거래법상 특례규정의 특례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법적 효력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개시한다.(법안 제27조) 또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데,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에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28조)

### Ⅲ. 세법상 세제지원 특례

#### 1. 개 요

정부는 2015년 7월 9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사업재편지원의 세부내용으로서 세제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계획은 2015년 9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기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여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상기 법률안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이며, 구체적으로는 법률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재편기업이 세제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 보다는 기존에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해왔던 세제특례의 내용을 부실기업 상태가 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시도하는 기업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재편지원의 내용으로 세제지원은 사실상 새로운 과세특례의 인정이라기보다는 기존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재편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던 산업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의 확장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사업재편지원의 세제지원 내용<sup>25)</sup>은 ① 중복자산 양도차익의 거치 및 분할 과세, ②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거치 및 분할, ③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④ 내국법인의 자산처분에 의한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거치 및 분할 과세, ⑤ 모회사의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을 위한 자산의 무상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모회사 손금 인정 및 자산수증이익의 거치 및 분할 과세, ⑥ 금융기관의 내국법인 채무면제시 채권금액의 금융기관 손금 인정 및 채무면제이익의 거치 및 분할 과세 등이며, 또한, 세제지원의 사후관리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과세특례 적용중단 요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세제지원 및 과세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감면받은 세액 등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함께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 2. 구체적 내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세제지원 내용의 구체화를 계획하고 있다.(조특법 제 121조의26 신설)

첫째로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으로 시행되는 주식교환시에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

25) 기획재정부, 2015년도 세법개정안 (2015.8.6.), pp.40~41

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하고, 주식교환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sup>26)</sup> 둘째로 사업재편을 위하여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특례를 인정하는데,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을 3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7)</sup> 셋째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에 특례를 인정하는데, 모회사는 채무인수 및 변제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 동안 거치하여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을 산입할 수 있게 하며, 자회사 등의 주주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특수관계자는 제외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sup>28)</sup> 넷째로 재무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채무의 상환자금에 충당할 때에 특례를 인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4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9)</sup> 다섯째로,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데, 수증법인의 경우는 자산수증이익을 4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주주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sup>30)</sup> 여섯째로 사업재편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특례를 인정하는데, 채무면제법인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sup>31)</sup>

---

26)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0

27)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0

28)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0

29)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1

30)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1

31)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1

한편,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따라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당 승인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되고, 또는 기준부채비율의 증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세제지원조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sup>32)</sup>

상기의 세제지원 내용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으로서 기본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연장한 정도의 수준으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러한 세제지원의 정책방향은 새로운 지원입법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세제지원의 확장 정도로 지원의 수위를 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 IV. 기타 지원제도

사업재편지원법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sup>33)</sup>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그레이존해소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서는 이에 대하여 “그레이존해소제도 또는 회색지역해소제도”를 “법령 등의 해석

32) 기획재정부, 앞의 자료, p.41

33)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기업실증특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새로운 사업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장관에게 『새로운 규제의 특례조치에 관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규제의 특례조치』는 사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등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활동에 어떠한 제약을 부과하는 법률과 하위법령 등 이른바 규제에 대하여 신사업 활동계획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규제의 특례조치 정비에 있어서는 안전성 확보 등 규제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등이 취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규제의 특례조치가 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개정하고 ②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규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③ 주무성령에 의해 규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주무성령을 제정하여 각각 서비스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經濟産業省, 앞의 책, pp.21~22)

및 적용의 확인”으로 표현하고, “기업실증특례제도”를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의 요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지원(법안 제31조),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혁신 지원(법안 제32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법안 제33조) 등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지원은 승인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활동 등에 대한 자금지원(법안 제30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기업실증특례제도

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기업과 승인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무부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법령의 해석 및 적용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34조제1항) 법령의 해석 및 적용유무에 대한 확인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사항과 소관부처 및 소관법령에 따라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해당 요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안 제34조제2항제1호)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여부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법안 제34조제2항제2호)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상기의 절차를 진행한다.(법안 제34조제2항제3호)

## 2. 회색지역해소제도

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기업과 승인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대하여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법령·지방자치법규·행정규칙 등 인지 여부를 포함) 및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법안 제35조제1항) 이러한 규제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법안 제35조제2항)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의 개정 및 기타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안 제36조)

## 3.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활동 등에 대한 자금지원

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안 제30조제1항) 특히 구체적으로 ①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

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열거·예시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법안 제30조제2항) 생산성향상설비에 대한 자금지원 규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법안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놓은 상태인데,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자금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up>34)</sup>

---

34)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생산성향상설비에 대한 자금지원의 모델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축조해설집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사업재편 및 특정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그 중 하나로서 지정금융기관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업무의 특례를 조치하고 있다.(동법 제39조) 이 장기·저리 융자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해서 『생산성향상시설 등의 도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위한 자금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성향상설비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성향상설비』란, ① 『제품생산 혹은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제공하는 시설, 장비, 장비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생산성향상시설 등의 외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계 장치 및기구 비품 등의 설비·장비에 재고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과 운영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건물, 건물 부속 설비 등의 시설 등 제조업, 비제조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에 이용되기 위하여 제공되며, 사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시설 등을 널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 『사업의 생산성향상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 경제산업성 관계 시행규칙 제5조에서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단위 시간당 생산량, 정확성, '에너지 효율 등의 생산성에 관한 지표가 연평균 1% 이상 향상된 최신 모델일 것 또는 당해 설비 등의 도입으로 연평균 15% 이상의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것임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經濟産業省, 앞의 책, pp.48~49)

## 제 4 장 사업재편지원의 법적 쟁점

### 제 1 절 추진체계 관련 쟁점

#### I. 사업재편계획의 정부승인에 의한 법안 적용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선택한 추진체계는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기업만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부에 의하여 법안의 적용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을 정부가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지원법률들과는 다르게, 이미 법률로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건과 승인 절차,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입법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목적이 가지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안에서는 법률 단계에서 특례적용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예견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법안에 의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특례적용을 승인할 수 있는 고려사항 정도만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게 된다면,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칫 특례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

의 취지와 입법목적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법 적용의 공평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추진체계에서 자의적인 법적용에 대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사업재편지원법안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시행되는 입법례가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 해당 입법례로서 사업재편지원법안과 동일한 형태로 정부정책 및 법률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상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게 되면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구조가 사업재편지원법안과 동일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입법례

**제 8 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지원법에 근거하여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절차, 간이합병, 분할·분할합병 절차,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또한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인수·합병 등의 지원, 자금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입지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업전환지원법은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중요한 입법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법과 법률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례에 의하여 법리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이 갖고 있는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이 추진체계상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현행 추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인 승인에 의하여 제도운영이 좌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I. 적용대상 명확성의 문제

현재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법안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제시되는 기준으로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의 표현이 제한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재편”에 대한 개념과 “과잉공급”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재편”에 대한 개념은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구조를 변경함과 동시에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법률에서도 기업의 조직변경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법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정하고만 있을 뿐, “상당기간”의 정도와 “악화의 상태” 등 구체성을 가져야 할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법률이 지켜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최소한 법률에서 과잉공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 또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를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적 측면의 논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과잉공급을 판단하는 경제학적 판단기준은 하위법령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잉공급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공급과잉” 판단기준**

업종 또는 사업분야(이하 “업종 등”이라 함)에서 공급과잉구조에 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1)의 범위에 의하여 특정된 업종 등이 다음의 (2)와 (3)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공급과잉구조의 판정대상업종 등의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

생산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용역의 기능 또는 효용이 수요자에게 동종 또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으며, 생산 또는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업계의 특성이 공통되고 있는 경우.

**(2) “공급능력이 수요에 비추어 현저히 과잉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

3년 이상에 걸쳐서 판정대상업종 등에서 사업재편계획의 인정시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치가 과거 20년 동안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그 요인으로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 ① 최근 3년간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가격의 1건당 평균하락율 보다 해당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원자재가격 등의 비용에 대한 1건당 평균하락율이 낮은 것.
- ② 최근 3년간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서비스 가격의 1건당 평균상승률 보다 해당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원자재가격 등의 비용에 대한 1건당 평균 상승률이 큰 것.

**(3) 그 상태가 “장기 계속할 전망이다”에 대한 기준**

관정대상업종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가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 없는 경우.

- ① 해당 업종 등에서 우선적으로 수요의 회복으로 연결될 만한 상황에 큰 변화와 현상이 예상되지 않은 것.
- ② 해당 업종 등에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업계의 특성이 있는 경우.

**(4) 관정을 위한 통계방법**

상기 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단체에 의한 통계, 이들에 준하는 자료, 관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 업종 등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때 해당 업종 등에 대한 통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종 등의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 출처 :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 逐条解説, 一般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会 (2014.5.22.), pp.126~127

### Ⅲ.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사업재편의 목적에 대하여 정의규정에서 “사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안 제2조제2호) 이러한 사업재편의 목적은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을 어

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법률에서 일정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생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필요할 것이며, “상당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재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지침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생산성의 상당정도 향상”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생산성의 상당정도의 향상” 판단기준**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추진하는 법정기간 내에 법정 수준을 상회하는 생산성 향상 (생산성의 “상당정도”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이 “생산성의 상당정도 향상”에 대해서는, 계획실시기간(3년이내) 사업부문 단위로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수정 ROA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연구개발비) / 총자산의 장부가액]의 2% 포인트 이상 향상
- ②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 /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5%이상 향상
- ③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영업이익 + 인건비 + 감가상각비) / 종업원수]의 6% 이상 향상

※ 출처 :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 逐条解説, 一般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会 (2014.5.22.), p.35

#### IV. 법령의 체계정합성 문제

사업재편지원법안 제7조에서는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7조제2항에서는 실시지침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①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③ 사업재편의 실시 에 필요한 절차,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실시지침의 내용에 대한 위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침에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시행령에 근거와 내용의 대강이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법안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경우 신청기업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승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지침에 공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록, 법안에서는 법률의 규정으로 지침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시지침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법안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된다는 권리 또는 최소한의 기대이익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도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지침이 아닌 법률에서 상향하여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하면서 많은 내용을 행정부에 의하여 공고되는 지침에 위임하는 경우 실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포괄위임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기업의 공급과잉상태”, “생산성의 상당정도 향상”는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일정 수준 이상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①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②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③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④ 그 밖에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인시 고려사항은 사실상 신청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승인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법안 제7조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제10조의 승인시 고려사항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률과 시행령에서 승인시 고려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여될 정도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V.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법안에 의하여 업무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실상 기업의 가치와 주가 그리고 사업재편계획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내부의 임직원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을 접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합병·분할 등의 기업조직재편행위는 이행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면서, 신청기업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어,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신청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을 알게 되고, 신청기업이 추진하려는 사업재편전략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업재편계획을 최종적

으로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열람하게 되는 업무위탁자들은 신청기업의 기업내부자가 아닌 제3자로서, 신청기업에 대한 중요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영업비밀을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사업재편지원법안은 지원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벌칙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인기업의 보고의무위반, 자료제출거부, 시정요청미이행과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지원법률에서 제재규정이 다수 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업재편지원에 있어서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규정이 형해화되거나 무의지해지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지원내용 관련 쟁점

### I. 상법상 특례 관련 쟁점

#### 1. 역삼각합병·삼각분할합병 도입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상법상 특례규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른바 “역삼각합병”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삼각합병이란 주식교환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교환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써 “삼각주식교환제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역삼각합병에 관한 내용은 이미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재편지

원법안에서 이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른바 주식교환에 의한 조직재편이 이루어질 때에 모회사의 주식을 그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삼각주식교환제도”가 포함되어 있다.(상법개정안 제 360조의3제6항 및 제7항) 현재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내용은 상법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는 역삼각합병 또는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축조하여 규정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상법과 상법개정안 그리고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역삼각합병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해보면, 상법개정안의 경우 상법의 주식교환계약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식교환시에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한 내용인데,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이를 상법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규정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역삼각합병 또는 삼각주식교환제도에 대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의 대가로 자신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삼각주식교환이라 하는데, 개정안은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역삼각합병의 도입을 인정하였고,<sup>35)</sup> “상법 개정안은 주식교환 시에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다양화하여 기업재편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역삼각합병의 도입 취지가 기업구조조정수단으로서 효용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5.4), p.9

다.<sup>36)</sup>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그 효용성과 장점이 인정되는 역삼각합병의 도입을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충분히 부합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는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인수대상 회사를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의 완전자회사(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 대상회사가 존속하게 되므로 대상회사의 계약상 지위,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모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편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37)</sup> 한편,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역삼각합병과 함께 삼각분할합병제도<sup>38)</sup>를 함께 도입하고 있는데, 삼각분할합병의 신설안도 역삼각합병의 신설조문과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 역삼각합병의 상법상 도입과 마찬가지로 분할합병의 상법상 도입도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역삼각합병과 삼각분할합병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물론 상법에 합병, 주식교환 등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법개정안을 통하여 도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도 그 역삼각합병과 삼각분할합병의 효용성과 사업재편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안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상법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법개정안 통과되면

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의 자료, p.9

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의 자료, p.10

38) 회사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의 자료, p.16)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역삼각합병과 삼각분할합병에 관한 내용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특례 규정들이 대부분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규제사항 등을 완화시키거나 적용배제시킴으로써 절차적 장애를 제거하고, 사업재편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삼각합병과 삼각분할합병에 대한 사안도 현행 상법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지만, 상법에 먼저 도입이 되고, 도입된 상법상 내용에 대하여 한층 더 진일보하여 사업재편수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 2.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인정 여부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이익조정장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교환과 같은 기업의 조직재편행위는 주주와 채권자, 경영진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상황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

39)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을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충돌의 해소방안으로 이해하면서,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은 회사의 조직이나 경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당해 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서 이와 같은 회사행위에 찬성하는 다수주주들과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해충돌에 대하여 다수결의 결정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주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게 된다면 결국 소수주주들은 그들이 회사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에 대한 불안을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반대로 이해관계의 충돌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기업의 경영이나 발전에

상기한 바와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매수청구권 행사절차의 복잡성, 절차진행의 비용부담 문제 및 매수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 등을 느낄 수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대한 부담, 매수청구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며, 때로는 회사행위 자체가 저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하는 것은 회사경영진은 물론이고 다수주주에게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소수주주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 인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40)</sup>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기업의 합병·분할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업재편지원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었다. 특히, 기업 및 산업계에 있어서는 사업재편지원의 영역을 넘어서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즉,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에 일시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져서 사업재편계획의 무산이 우려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일률적으로 확정되

---

장애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또한 주주들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다수결원칙에 따라 다수주주로 하여금 그들의 의도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수주주들에게는 그들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여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간의 이해조정 측면에서 자본다수결원칙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접점으로 발생한 제도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로써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매수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자들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승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8), p.82)

40) 이승철, 앞의 글, p.83

고, 이후에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의사결정 이후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출한 뒤 시장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빈번한데, 예를 들어서 이사회 결의 이후 매수청구권 행사의 종결일까지 통상 3~5개월이 걸리고, 통상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실제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권의 남용사례가 빈발하게 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소수주주가 채무적 투자자(은행, 자산운용, 연금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적정가치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여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sup>41)</sup> “반대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의 단축과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합병반대의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에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일부 소주주주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한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sup>42)</sup> 그러나 이러한 기업 및 산업계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주장과 요청은 받아들여지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소폭의 내용만을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수용하였다. 현재로서는 사업재편지원을 하기 위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고, 기업이 해관계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은 향후에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전망된다.

41)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 (2015.6), pp.13~14

4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자료, pp.14~15

### 3. 소규모합병 등 특례인정 비율

『상법』상 소규모주식교환에 있어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식교환의 뜻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0조의10제5항) 또한, 소규모합병에 있어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소규모주식교환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소규모합병을 반대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3제4항)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또는 제527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 제4항 또는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안 제16조제2항) 상법상 인정되는 일정 비율 보유 주주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특례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법리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상기 법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상 권리의 발생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특례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상법상 “100분의20”을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100분의10”으로 특례를

정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100분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비율로 적용되어 제도가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론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상 타당한 입법기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변경시키는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그 특례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임입법법리의 위반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법상 소규모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에서 인정되고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에 대한 특례를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례로 인정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까지만 규정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II. 공정거래법상 특례 관련 쟁점

### 1.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적용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까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정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주회사가 반드시 규제의 대상으로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업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효용성을 가진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경제력억제 등 지주회사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부상하던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금지되

거나 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인정되었지만, 지주회사가 가지는 효용성이 발휘되어야 할 시기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주회사가 가지는 본질적인 장단점이 기업환경과 경제상황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주회사의 효용과 폐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의 효용에 관해서는 “특히 순수지주회사의 경우는 개별사업 부문을 분사화(分社化)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위험을 개별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음으로써 위험차단 효과를 가지고 위험성을 수반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계열기업간 소유구조가 얽혀 있는 경우 한 회사의 부실이나 부도가 다른 계열기업으로 파급되기 쉬운데, 기업집단 체제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위험차단벽이 자연적으로 설치되고, 주력 사업부문을 지주회사화하고 취약한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함으로써 주력부문에 대한 자본유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분리·매각 등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구조조정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계열기업간 출자방식보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효과를 가져올 있다”고 설명한다.<sup>43)</sup> 반면에, 지주회사의 폐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자본의 승수적(乘數的) 확장에 의한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 적은 자본으로도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경제력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신 또는 다른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자회사 자체, 그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44)</sup>

43)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2012), p.113

44) 이기수·유진희, 앞의 책, p.114

상기한 지주회사의 효용과 폐해를 살펴보면, 지주회사는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업이 효율적으로 확장·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주회사의 효용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주회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주회사의 효용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위험수단의 회피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단순화 등의 사항이 아니라 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에 있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주회사의 활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현재 규제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사항을 사업재편기간 동안 만큼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업재편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 활용을 광범위하게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주회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지주회사의 규제를 폭 넓게 완화시켜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지주회사의 규제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적집중의 억제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설립과 전환이 전면적인 금지되었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지주회사가 가지는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지주회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부채비율 제한 등 행위제한에 대하여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의 허용범위는 확대되었다. 지주회사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주식보유제한 기준 또한 완화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지주회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킴으

로써 지금의 지주회사제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연혁을 분석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기업운영방식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기업구조조정수단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확실하게 인정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승인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사업재편 기간 동안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보다 한층 더 완화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재편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규제의 연혁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완화된 지주회사 규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는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한 최후의 제한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규제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유예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효용을 발현시키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재편수단으로 인정되는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보다 선행적으로 시도된 규제개혁이라고도 평가될 수 있다.

## 2. 기업결합심사기간의 단축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하여 특례적용을 받는 승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특례 사항 중에서 기업과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은 앞에서 살펴 본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완화인데,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특례적용 사항으로 요청되었던 사항이 기업결합심사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하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되는 서류로서 사업재편이 공정거래법 제12조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결합신고서류”이며,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공정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9조제5항) 이러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입법 취지는 기업결합과 관련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같음한다는 것으로 절차의 단축과 진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이미 기업과 산업계에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승인신청의 같음은 긍정적인 입법반영으로 평가되지만, 이와 함께 요청되었던 기업결합심사기간의 단축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일정한 기준의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고,(공정거래법 제12조제1항)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제6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2조제7항) 그런데 기업 및 산업계의 주장에 의하면, “장기간의 기업결합 심사로 인해 구조개선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

업결합심사기간에 대하여 30일의 기간을 15일로 단축하고, 연장가능한 기간도 90일에서 30일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sup>45)</sup>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받은 기업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개척하거나 공급과잉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심사에 저촉될 우려가 적다”는 이유를 함께 제시하였다.<sup>46)</sup>

현재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입장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갈음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신속하게 단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과 산업계의 요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한다면, 승인신청에 의한 기업결합신고의 갈음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실제로 심사를 하는 법정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심사제도는 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사업재편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결합심사제도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다만 그 심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신속을 도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기업실증특례제도 · 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는 그 내용이 다소 이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제도라서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나 『법제업무운

4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 (2015.6), pp.18~19

46)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자료, pp.18~19

영규정』에서 거의 흡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제도도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업재편지원제도와 규제개혁방안과는 상이한 내용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에서 수평적인 위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법률의 내용적 측면과 체계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냐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이외에도 상향식(Bottom-up) 규제개선방안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에 근거없이 정책적인 규제개혁정책으로 추진되는 사례라는 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는 사업재편지원법안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기대이익을 갖고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말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의 취지를 파악한다면, 국내 도입의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에 관한 취지에 관하여 경제산업성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축조해설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제도도입 취지**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신제품개발 등 신사업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장관에게 당해 새로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제의 특례 조치를 규제소관 행정기관에 요청하라는 제도(동법 제8조)이다. 또한 회색지대해소제도(그레이존해소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장관에게 당해 사업 활동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당 규제를 규정하는 법령을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라는 제도(동법 제9조)이다. 두 제도를 통해 민간주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자에 의해 제도가 활용되는 것을 촉구하고, 사업자의 새로운 비

즈니스 활동에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동법 제3조)에서도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재검토 기타 필요한 사업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실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널리 사용하는 제도로 하고 있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새로운 사업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새로운 규제의 특례조치의 정비 요구와 규제적용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장관은 소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규제를 규정하는 법령을 소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요구를 고려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신사업 활동은 산업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산업경쟁력강화에 이바지 신사업활동은 당해 사업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의 향상 또는 새로운 수요 개척에 이어지는 새로운 사업 활동이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을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시행규칙47)에서 “신사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 출처 :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 逐条解説, 一般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会 (2014.5.22.), pp.22~23

- 47)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신사업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를 정의함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신상품의 개발 또는 생산 : 지금까지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던 상품이 속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 속하는 제품 또는 같은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도 원료 생산 가공 기술 등이 다르게 함으로써 성능, 용도, 판로 등이 다른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생산, ② 새로운 용역의 개발 또는 제공 : 지금까지 제공한 용역(서비스)이 속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 속하는 것, 또는 같은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도 질이 다른 것으로 이용 목적, 제공 경로 등이 다른 새로운 용역 개발 또는 생산, ③ 제품의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 지금까지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도 새로운 생산 공정 및 시험 평가 방법의 도입 등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④ 제품의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 : 물류의 원활화 및 전자 거래의 도입 등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 ⑤ 용역의 새로운 제공 방법의 도입 : 특정 고객에 특화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의 도입, ⑥ 기타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 : 위의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개발·생산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 및 생산 공정의 고도화 등 신사업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에게 시스템면에서 새롭고 성의있는 노력 등, ⑦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 위 ①에서 ⑥ 중 사업 활동도 생산성의 향상 또는 새로운 수요 개척이 예상되는 것이며,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성향상은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외에도 자원생산성 향상도 포함하

상기 도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실증제도와 그레이존해소제도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한편으로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기업실증제도와 그레이존해소제도가 포함되어 시행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타당하게 제도운명을 할 수 있다는 설득력 또한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내용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제도를 다른 법률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제22조의5의 신설은 기술발전 및 융합 등으로 기존규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사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규제의 적용 유무 등을 질의하거나 행정규제의 면제, 완화 또는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규제의 탄력적용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sup>48)</sup> 이는 기업실증제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성으로 인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사업재편지원법안의 기업실증특례제도에 대한 검토사항과 그 내용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즉,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의 탄력적용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의견은 사업재편지원법안의 “기업실증특례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에 의하면, “규제의 탄력적용제도는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산업융합 촉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②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법에서 사안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체계이고, ③ 탄력적용제 신청 요건에 ‘적용되는 기존

---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經濟産業省, 앞의 책, pp.23~24)

48)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4.11), p.22

규제가 없거나'를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9)</sup> 이러한 비판적인 검토의견은 “기업실증특례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회색지대해소제도 즉,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에 관한 제도 또한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검토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법률의 내용은 아니지만 법제처 소관의 대통령령으로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내용은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제도의 내용을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규정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도가 추구하는 입법 취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충분히 포함시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입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및 중복에 대하여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는 ① 유사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 즉,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점, ② 사업재편 보다는 규제개선 관련 조문이어서 사업재편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③ 한시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④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지만, 기업에 의한 규제개선제언과 같은 방식은 굳이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 ⑤ 실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다보면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뿐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법률개정은 개정필요성에 의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법률상 근거를

49) 국회 정무위원회, 앞의 검토보고서, pp.23~25

두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⑥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 ⑦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등은 법제처 관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법령해석의 요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동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이유와 취지가 있다면, 일단 조문 자체에 있어서 수정·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주무부처와 관계부처의 역할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법적인 정부의무로 구속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 60일 등 기간제한에 관한 내용은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시행령으로 위임해도 될 성질의 것이지만, 60일 기간제한을 둬으로써 정부의 역할과 임무 수행에 강한 구속을 시킨다는 점의 취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특징으로서 60일 기간제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사실상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법안의 내용을 정부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만 정책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예상된다.

한편,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의 옴부즈만제도 등이 매우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시스템을 Bottom-up 방식의 규제개선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Bottom-up 방식의 규제개선방법과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기존의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기업실증특례제도”를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 제36조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의 개정 및 기타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조문의 취지와 필요성이 다소 의심된다. 즉, 규제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은 사실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령개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 관련된 법규의 개정 이외에 어떠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상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제 5 장 결 론

현재 국회에 입안되어 계류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기업과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청되어 온 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법제화 과정에 착수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업과 산업계의 사업재편지원에 대한 요청이 너무 지나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에만 그쳐졌던 사업재편지원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법안의 내용에 앞서서 그 시도 자체가 주목받을 만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의 내용에서는 아직 기업현실과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는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규정들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재편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재편계획도 단일화된 계획의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적인 제도운명을 위해서는 보완될 사항들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 등 하위법령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을 완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정부승인에 의하여 법안의

특례와 지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기준과 요건이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적용이 정부의 결정의 좌우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시도하려는 기업에게 있어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승인요건과 기준을 통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안 자체내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며, 향후 위임입법의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에 대하여 제도보완적인 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업재편지원법안에서는 “과잉공급”과 “생산성 향상 정도” 등 중요 핵심개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보완사항도 하위법령에 의한 보완으로 전체적인 제도의 완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재편지원법안을 완성된 제도로서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하여 법령의 체계정합성에 부합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에서 규정되지 못한 중요사항을 하위법령이나 지침에 위임하게 되는 경우 위임입법 법리에 위반되어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훼손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재편지원법안의 제도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우, 지침 수준에서 규정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보완만을 목적으로 하여 자칫 지침의 규정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담게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재편지원법안의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국회에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법개정안에 담겨있는 역삼각합병의 도입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들이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담겨져서, 함께 모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계류중인 법률들이 모두 입안되어 통과될 경우, 법률상호간에 충돌 및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입법 이후 제도운영에 있어서 사후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안의 일부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상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업재편지원법안은 지금까지 논의로만 진행되었던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산업활성화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입법 이후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완성된 법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영사 (2011)
-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2012)
-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3권 제1호(201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5.4)
-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4.11)
- 곽관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2)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세법개정안 (2015.8.6.)
- 김용춘, 사업재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 김윤경, 기업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일본 산활법의 시사점,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자료 (2015.6.17.)
- 대한상공회의소,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모태펀드 조성방안, 지식경제부 (2009.2)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사업재편 지원제도 구축방안 - 특별법 제정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2015.4)
- 빈기범 외 8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2008.12)

참 고 문 헌

이승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한국법학원 (2008.8)

최성근, 기업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의 분석 및 평가, 법학논총  
제29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11)

최용춘, 기업재편으로서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소고,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3호 (2006.9)

오영택·정성필, 국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와  
그 대안을 위한 서론적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3집  
(2011.9)

조항래·박상진,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우리금융경영  
연구소 (2013.9)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  
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  
정방안에 대한 의견 (2015.6)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 逐条解説, 一般財団法人經濟産業調査会  
(2014.5.22.)